##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4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최형두·김태호·서천호

송석준 • 조정훈 • 이상휘

박성민 • 윤한홍 • 안철수

김민전 • 이종욱 • 김예지

박대출 · 최수진 · 유상범

신성범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함)으로 지정함.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을 각각 받느라개발사업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남해안 대부분의 섬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행

위가 제한되며, 면적이 협소하고 산지로 구성되어 경사도가 높아 개별법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그 외에도 지정섬 내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하여 촉진구역사업계획 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적용 특례 등의 규 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3(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 ·신고·평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 의 점용 · 사용허가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 획의 승인
-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
-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 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6.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
- 7.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 8.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 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1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같은 법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 제13조의3제1항 중 "섬지역 주민의"를 "섬지역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입·건조·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4부터 제13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4(섬발전촉진구역 지정 등)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섬발전촉진구역의 사업계획서(이하 "촉진구역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정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섬발전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행정안 전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발전촉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섬발전촉진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섬발전촉진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

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촉진구역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촉진구역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섬발 전촉진구역 지정요건, 고시방법·절차 및 지정해제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의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13조의6(「수산자원관리법」에 관한 특례) 「수산자원관리법」 제52 조에도 불구하고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의7(「산지관리법」 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도 불구하고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전산지에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다.
  - ② 「산지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

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산 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경사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절개되는 사면의 보강이 가능한 때에 한정한다.

- 제13조의8(개발부담금 면제)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 제13조의9(국유·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유 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 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②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여야 한다.
- 제13조의10(「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섬발 전촉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섬발전촉진구역 내 폐 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도교육감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의11(융자) 국가는 섬발전촉진구역의 복지·의료·문화·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시설 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설치 및 운영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의4에 따른 섬발전촉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업의 시행자) ① 지정섬	제9조(사업의 시행자) ①
의 <u>사업시행자</u> 는 국가, 지방자	<u>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u>
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u> 자"라 한다)</u>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개발	② <u>사업시행자</u>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	
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발사업	
을 위탁할 수 있다.	
<u>&lt;신 설&gt;</u>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
	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
	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
	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며적 등 대통련련으로 전

<u>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u> 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의
2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
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허가·승인·신고·평가 등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
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 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 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 른 허가
-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6.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허가
- 7.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 8.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1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지 기정섬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 주 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② (생 략)<신 설>

<신 설>

	9조에	따른	해양여	이용협	의 및
	같은	법제	13조에	따른	해양
	이용역	영향평.	<u>가</u>		
(	② 제1	[항에	따른	인 • ㅎ	<u> </u>
,	의제의	기준	및 효	과 등	에 관
-	하여는	「행기	정기본	법」	]]24조
	부터 저	]26조개	가지에	따른다	<u></u>
테]	[3조의3	3(교통	편의	증진	지원)
(	①				
-					
-					
-					
_			섬	지역의	
_					
_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입·건조·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제13조의4(섬발전촉진구역 지정

- 등)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는 섬발전촉진구역의
  사업계획서(이하 "촉진구역사
  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정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섬
  발전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섬발 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발전촉진구역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섬발전촉진구역의 지

 정을 받은 경우

- 2. 섬발전촉진구역의 지정목적 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 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촉진구역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 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촉진구역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섬발전촉진구역 지정요건, 고시방법・절차 및 지정해제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전용되는 건폐율·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내의 범위에서

<신 설>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의6(「수산자원관리법」에 관한 특례) 「수산자원관리법」에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촉 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라 수산 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관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의7(「산지관리법」 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촉진구역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전산지에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
사용을 할 수 있다.

② 「산지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경사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신 설>

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절개되는 사면의 보강이 가능한 때에 한정한다.

제13조의8(개발부담금 면제) 촉진 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제13조의9(국유·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촉진구역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수 있다.

②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를 임대하는 경우「국유재산 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

<신 <u>설></u>

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 여야 한다.

제13조의10(「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섬발전촉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섬발전촉진구역 내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주거시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시・도교육감과 협의를 거쳐야한다.

제13조의11(융자) 국가는 섬발전 촉진구역의 복지·의료·문화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에게 설치 및 운영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할 수 제14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섬
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1. ~ 3. (생 략) <신 설>

4. • 5. (생략)

② ~ ⑥ (생 략)

Ø]	T)	L	
ᄊ	_		•

제14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	-----

- ① -----
- -----.
-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3조의4에 따른 섬발전
   촉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4. 5.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